

제 916 호  
1982. 6. 2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편집 : 공 보 관 전 명 호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 1639 호 :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 3

제 1640 호 :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 정액조례중 개정조례 ..... 4

제 1641 호 :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 4

<이면계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규	칙		
	제 1979 호 :	서울특별시 강동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조례	시행규칙 .....	7
◎	교육위원회	규칙		
	제 260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	8
◎	훈	병		
	제 575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 .....	13
◎	고	시		
	제 238 호 :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 지정 .....		14
	제 239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정류장) 변경시행허가 .....		16
	제 240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		17
	제 241 호 :	재개발사업 환지확정 처분일부정정 .....		18
	제 242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18
	제 243 호 :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한일은행분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19
	제 244 호 :	육류연동가격 고시 .....		19
	제 24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19
	제 24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허가 .....		20
◎	공	고		
	제 283 호 :	K S 표시정지처분공고 .....		20
	제 284 호 :	신봉중고교진입로개설공사실시계획 공람공고 .....		21
	제 286 호 :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		23
	제 288 호 :	금문도 특정가구 정비사업 (관광공사분구) 완료공고 ...		24
	제 289 호 :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시행계획정정공람공고 .....		24
◎	구	청공고		
	제 26 호 :	관인개작공고 .....		27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 제 1639 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4 급	1	행정직 1
5 급	2	행정직 1, 기계, 전기직 및 건축직 1
6 급	6	행정직 3, 건축직 1, 전기직 1, 기계직 1
7 급	9	행정직 6, 건축직 1, 기계직 1, 전기직 1
8 급	6	행정직 2, 농림직 1, 토목직 1, 전기직 1, 간호직 1
별정직	9	6급상당 : (전산처리관 1, VTR 편집요원 1) 2 7급상당 : (전산처리관 1, 기계처리사 1, 위험물취급주임기사 1) 3 8급상당 : (전산처리사 2, 기계처리사 1, 공해측정기사 1) 4
기능직	10	6등급 : (기계 또는 전기장 2, 통신장 1) 3 7등급 : (통신장 1, 기계장 1, 전기장 2) 4 8등급 : (통신원 3) 3
교용직	116	수위 8, 기계공 12, 전공 13, 운전원 2, 다자원 1, 대표원 10, 경비원 12, 수표원 10, 안내원 7, 지도원 10, 인장 1, 복음 1, 교환원 4, 잡무원 12, 차트사 1, 통신원 6, 청부 1, 사환 2, 전달부 1, 수리공 2
합 계	159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  
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640 호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  
원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가. 일반회계 정원표"

중·고용직 정원란 "2193"을  
"2171"로, 정원내용란 전공 "176"  
을 "172"로, 매표원 "116"을  
"98"로 하고, 합계란 "7790"  
을 "776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  
특별시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 7.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구본석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641 호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사용료 징수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  
전의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사용  
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u>체 육 관 사 용 료</u>				
1. 기본전용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토·일·공휴일	평 일	비 고	
· 체 육 경 기				
가. 주 간	33,800	26,000		
나. 야 간	43,940	33,800		
· 체육이외의 행사				
가. 주 간	169,000	130,000		
나. 야 간	219,700	169,000		
2. 이 용 료			(단위: 원)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 개 인	1인 2시간당	1,200	학생(고등학교 이하)은 5할 할인	
· 단체(동일팀 소속 10인 이상)	"	840		
3. 입 장 료			(단위: 원)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 일 반	1인 1회	60	학생은 고등학교 이하에 한함.	
· 13세이하의 아동 및 학생	"	40		
4. 증계방송료			(단위: 원)	
구 분	I V		라 더 오	
	국제경기	국내경기	국제경기	국내경기
프로경기	100,000	40,000	50,000	20,000

구 분	T V		라 디 오	
	국제경기	국내경기	국제경기	국내경기
각종체육경기	50,000	20,000	25,000	10,000
체육이외행사	100,000		50,000	
비 고	TV 녹화 : TV 중계방송로의 5할 징수 라디오 녹음 : 라디오 중계방송로의 5할 징수 경기(행사) 촬영 : TV 중계방송로의 동액 징수			

5. 상업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촬영</li> <li>에드빌물품 부양광고물</li> <li>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li> <li>선전(광고)물 위한 부화 게시 진열, 전람 부화광고물 : 1미터 X 10미터 이내 1점 기준</li> <li>진열, 전람 : 1평방미터 이내 1점 기준</li> <li>기타 물품판매 대여</li> </ul>	주간 : 60,000 야간 : 90,000 1개당(1일) 6,000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1부당가격 X 판매부수 X 2할 1년 : 360,000 5일 이내 : 50,000 1일초과 : 5,000 위와 같음 (매출금액 - 원가) X 2할

6. 부속시설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성기(1일1개)</li> <li>전기조명</li> <li>음향설비</li> </ul>	5,000 실제 사용한 전기, 유류의 고시가격 또는 관허요금 기본료(10,000) + 실제 사용한 전기, 유류의 고시가격 또는 관허요금

**규 칙**

서울특별시 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1982년 7월 2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979 호

서울특별시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환지방식 ) 환지방식은 평가식 환지방식으로 한다.

제 3 조 ( 환지설계의 기준시점 ) 환지설계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 환지의 위치 ) 환지는 가급적 원위치 환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 또는 토지이용계획상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등을 감안하여 대응한 위치에 비환지 한다.

제 5 조 ( 권리면적산출 ) ①정리후의 권리면적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E = \frac{A:d:(i:d)Y}{e_i}$$

단 E: 정리후 권리면적

e<sub>i</sub>: 정리후 각획지면당 지수

A: 정리전 토지의 면적

a<sub>i</sub>: 정리전 토지의 해당 지수

d: 일반지의 평균 광보율

Y: 일반지의 택지여권 증잔율

②정리후 권리면적이 정리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서 그 광보율이 평균광보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도록 정리후 권리면적을 정한다.

다만, 비환지의 경우와 사도등 정리전 토지의 평가지수가 특히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 획지의 규모 ) 정리후의 획지는 용도지역등 토지이용 계획에 감안하여 1택지가 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기존건물등이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간선도로변의 획지는 330㎡이상

②일반주택지의 획지는 155㎡ - 255㎡

③소택지의 획지는 100㎡ - 165㎡

제 7 조 ( 환지의 앞면길이 ) 정리후 획지의 앞면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옆면길이의

1/3 이상으로 하고 그 앞면길이는 건축법 제 33 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대지의 최소 앞면길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한다.

제 8 조 (과소토지의 기준)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는 일반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90㎡ 미만, 대지 이외의 일반토지는 165㎡ 미만으로 하며 사도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평가지수가 현저히 낮은 토지는 소택지의 획지(100㎡)에 환지할 수 없을 경우 과소토지로 한다.

제 9 조 (과소토지의 조치) ① 과소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에 권리면적을 산정하여 청산시 보류지를 평가하여 권리면적율 기준으로 금전청산한다.

② 환지계획 인가후 과소토지 소유자가 청산을 원할때는 환지처분전에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 10 조 (환지의 분할) 토지이용계획 등 환지계획상 필요할때는 종전토지 1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종전토지 수필에 대하여 1개의 획지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채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4 조에 규정한 채비지에 대하

여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범위의 면적을 공공용지 토지이용 계획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위치에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한외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위원회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 6. 2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구본석

◎ 교육규칙 제 260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직중인 지방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지방공무원 정원군별 정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연 감소될때까지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원군의 정원으로 본다.

(별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

○ 지방공무원 정원총괄표		지방행정주사	453
총 계	4,221	지방사서	33
별정직제	8	지방건축기사	19
비상계획관 (5급상당)	1	지방전기기사	5
비서관 (5급상당)	1	지방기계기사	5
비서 (6급상당)	1	지방토목기사	5
속기사 (6급상당)	2	지방간호기사	3
전산처리사 (7급상당)	2	지방약무기사	1
전산처리사 (8급상당)	1	지방보건기사	8
3급내지 9급제	1,316	지방행정주사보	246
지방부이사관	1	지방사서보	56
지방의무부기감	1	지방건축기사보	12
지방서기관	5	지방기계기사보	5
지방의무기정	5	지방전기기사보	10
지방행정사무관	68	지방토목기사보	6
지방사서관	12	지방보건기사보	63
지방보건기과	2	지방간호기사보	7
지방전기기과	1	지방행정서기	174
지방토목기과	1	지방사서서기	54
지방건축기과	4	지방건축기원	6

지방토목기원	1	지방통신장 ( 6 등급 )	1
지방전기기원	1	지방전기장 ( 6 등급 )	2
지방기계기원	-	지방기계장 ( 6 등급 )	9
지방보건기원	3	지방기계장 ( 7 등급 )	19
지방간호기원	-	지방전기장 ( 7 등급 )	3
지방보건기원보	3	지방통신장 ( 7 등급 )	2
지방행정서기보	10	지방기계원 ( 8 등급 )	-
지방사서서기보	27	지방전기원 ( 8 등급 )	-
지방진호기원보	-	지방기계원 ( 9 등급 )	-
지방전기기원보	-	지방조무원 ( 9 등급 )	-
기 능 직	36	교 용 원	2,861
<b>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군</b>			
○ 교육위원회 ( 본청 ) 지방		지방기계기사	2
○ 공무원 정원		지방보건기사	1
총 계	252	지방행정주사보	23
별정직제	5	지방사서보	1
비상제획관 ( 5 급상당 )	1	지방건축기사보	5
비 서 관 ( 5 급상당 )	1	지방전기기사보	2
비 서 ( 6 급상당 )	1	지방기계기사보	2
속 기 사 ( 6 급상당 )	2	지방토목기사보	3
5 급내지 9 급제	151	지방보건기사보	2
지방행정사무관	22	지방행정서기	23
지방보건기좌	1	지방토목기원	1
지방전기기좌	1	지방건축기원	5
지방건축기좌	3	지방전기기원	1
지방토목기좌	1	지방보건기원	-
지방행정주사	41	기 능 직	-
지방토목기사	2	지방기계장 ( 7 등급 )	
지방건축기사	8	지방전기장 ( 7 등급 )	
지방전기기사	1	교 용 직	96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정원		기 능 직	
총 계	790	지방기계장 ( 6 등급 )	4
3급내지 9급 계	297	지방전기장 ( 6 등급 )	1
지방부이사관	1	지방통신장 ( 6 등급 )	1
지방의무부기감	1	지방기계장 ( 7 등급 )	7
지방서기관	5	지방전기장 ( 7 등급 )	1
지방의무기정	5	지방통신장 ( 7 등급 )	2
지방행정사무관	14	지방기계원 ( 8 등급 )	-
지방사서관	12	지방통신원 ( 8 등급 )	-
지방보건기좌	1	지방기계원 ( 9 등급 )	-
지방행정주사	16	교 용 직	483
지방사서	33	○고등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지방보건기사	7	총 계	472
지방간호기사	3	별정직 계	6
지방전기기사	1	전산처리사 ( 7 급상당 )	1
지방기계기사	-	전산처리사 ( 8 급상당 )	1
지방약무기사	1	5급내지 9급 계	100
지방행정주사보	18	지방행정사무관	26
지방사서보	55	지방행정주사	31
지방보건기좌보	9	지방행정주사보	12
지방간호기사보	7	지방보건기사보	3
지방기계기사보	-	지방전기기사보	1
지방행정서기	15	지방행정서기	11
지방사서서기	54	지방보건기원	-
지방보건기원	3	지방전기기원	-
지방간호기원	-	지방행정서기보	-
지방행정서기보	-	기 능 직	16
지방사서서기보	27	지방기계장 ( 5 등급 )	4
지방보건기원보	3	지방전기장 ( 6 등급 )	1
지방간호기원보	-	지방기계장 ( 7 등급 )	7

지방전기장 ( 7 등급 )	2	지방전기기원보	-
지방기제원 ( 8 등급 )	-	기 능 직	3
지방전기원 ( 8 등급 )	-	지방기제장 ( 7 등급 )	3
지방조무원 ( 9 등급 )	-	교 용 직	158
교 용 직	360	○중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총 계	496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구		6급내지 9급 계	178
청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군		지방행정주사	98
		지방행정주사보	89
○교육구청 지방공무원 정원		지방행정서기	11
총 계	378	지방행정서기보	-
5급내지 9급계	217	기 능 직	1
지방행정사무관	6	지방기제장 ( 6 등급 )	1
지방건축과	1	교 용 직	297
지방행정주사	61	○국민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지방건축기사	11	총 계	1,807
지방전기기사	3	6급내지 9급 계	357
지방기제기사	3	지방행정주사	205
지방토목기사	3	지방행정주사보	40
지방행정주사보	50	지방행정서기	69
지방기제기사보	3	지방보건기사보	43
지방건축기사보	7	교 용 직	1,450
지방전기기사보	3	○청소년직업학교 지방공무원	
지방보건기사보	6	정원	
지방토목기사보	3	총 계	19
지방행정서기	46	6급내지 9급 계	2
지방건축기원	1	지방행정주사	2
지방기제기원	-		
지방행정서기보	10	교 용 직	17

**훈 령**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 6. 30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㉔

○ 서울특별시훈령제 575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다음에 "(이하 "조례"라 한다)"를 삽입하고 "임상연구비" 다음에 "(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 3 조 제 1 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연구는 당해년도에 완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지급의 한계) ① 연구비는 매 연구 과제마다 조례가 정한 지급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구기간에 따라 별표 1 과 같이 조정 지급한다.

② 동일인에게는 2 개 이상의 과제에 의한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의의 경우 단독 연구 및 2 인이상의 공동연구로 인하여 각각 1 개 과제씩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2 개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기간의 산정은 연구계획서 제출시부터 연구보고서 제출시까지로 하되 연구완성에정일 이전에 제출시에도 또한 같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예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병원장은 연구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의한 계상금으로 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과제 연구중 일부 연구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로 교체할 수 있으며 연구비는 승계할 수 있다.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 (세부사항)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병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u>임상연구비지급한계</u>	
연 구 기 간	지 급 한 도 액
3개월 미만	지급치 않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해당연구비의 50%미만
6 " 9 "	" 50%이상 - 75%미만
9 " 12개월	" 75%이상 - 100%이내
(별표 2) <u>계산금지급방법</u>	
지 급 방 법	지 급 한 도 액
연구계획서 승인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1차 중간실적 보고서	" 20%
2차 "	" 20%
연구보고서 제출 심사후	" 40%
<p>*연구기간이 9개월미만일 경우 중간실적 보고서는 1회로 단축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고 시</div> <p>◎서울특별시고시제 238호</p> <p style="text-align: center;">상습재해지구및환경정비지구지정</p> <p>1. 특정건축물 성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습 재해지구 및 환경정</p>	
<p style="text-align: right;">비지구를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 및 관할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특정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6. 26 서울특별시장</p>	

○ 지구별위치 및 면적				
구 별	지구별	지구 명	위 치 및 지 번	면 적(㎡)
중구	환경정비	신당 1 지구	신당동 40 번지 일대	53,779
		" 2 "	" 333 번지 일대	33,749
용산구	"	서빙고지구	서빙고동 271 번지 일대	9,075
성동구	"	옥수지구	옥수동산 1,2 번지 일대	11,400
동대문구	"	청량리지구	청량리동 215, 234 번지 일대	32,662
		전농지구	전농동 620 번지 일대	61,000
		답십리 1 지구	답십리동 69, 60 번지 일대	55,800
		" 2 "	" 269, 488 번지 일대	35,643
		면목지구	면목동 842 번지 일대	24,000
		정릉지구	정릉동 797, 256, 236 번지 일대	74,999
성북구	"	성북지구	성북동 217 번지 일대	13,600
		안암지구	안암동 161 "	4,650
		돈암지구	돈암동 45 "	15,476
도봉구	"	하계 1	하계동 565, 311 번지 일대	86,442
		월계지구	월계동 319-5 번지 일대	5,853
		하계 2 지구	하계동 347, 337, 338, 340 번지 일대	72,253
은평구	"	수색지구	수색동 205 번지 일대	6,658
서대문구	"	남가좌지구	남가좌동 242 번지 일대	8,836
			북가좌동 139 "	
		연희지구	연희동 97 "	4,260
		대현지구	대현동 19, 21, 65 "	50,340
		성산지구	성산동 134 "	1,600
마포구	"	신수지구	신수동 91 "	10,800
		신공덕지구	신공덕동 1 "	20,687
		상습제해 합정지구	합정동 175 "	4,500
		대흥지구	대흥동 43 "	5,240
구로구	환경정비	신도림지구	신도림동 330 "	1,653
		구로 2 지구	구로동 125 "	9,164
		" 3 "	" 179 "	16,229

구 별	지구별	지구명	위 치 및 지 번	면 적 (㎡)	
강서구	상습제해	구로 1 지구	구로동 685 번지일대	220,686	
	환경정비	신정지구	신정동 산 77, 산 87, 산 88 번지일대	13,965	
	상습제해	안양천지구	" 147-5 번지일대	287,381	
영등포구	환경정비	당산지구	목동 173-2 "		
		당산동 4, 5	"	12,078	
		대림지구	대림동 795, 706	"	20,990
		" 2 "	" 1053-12	"	7,091
동작구	"	" 3 "	" 749-57	"	9,182
		본동지구	본동 8, 12, 42	"	38,660
		사당 1 지구	사당동 산 14-1	"	9,920
		" 2 "	" 산 17-1	"	34,920
관악구	"	신림지구	신림동 산 63-250	"	16,033
강남구	상습제해	삼성지구	삼성동 154	"	5,304
계	40 개 지구				1,409,416

○도면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9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4 호 ( 82.4.2 ) 로 도시계획사업 ( 여객자동차정류장 ) 허가된 당구 번동 499-1 번지에 대하여는 하수도구조물이 제외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 81.12.31 )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 여객자동차정류장 )

변경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1982. 6.29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번동 499-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 여객자동차정류장 ) 변경시행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091 ( 330 ) 평  
 변경전 사업내역 :  
 콘크리트포장 ( t = 15cm A = 6a

<p>석축(H= 2m) L=28m                  하수관(D=600mm) L=39m                  원형맨홀(1.2×1.2m) H= 3개소                  변경사업내역:                  콘크리트포장(t= 15cm) A= 6 a                  석축(H= 2m) L=28m</p> <p>라. 사업의 시행자 주소성명:                  서울특별시도봉구본동 375                  한성운수(株) 대표이사 김인석</p> <p>마. 사업의착공 및 준공예정일:                  82.4.7 ~ 7.15</p> <p>바. 위치 및 계획평면도: 별첨                  *도면은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p>	<p>◎서울특별시고시제 240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50 호(82.2.3)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 제 13 조 및 건설 고시 제                  521 호(81.12.31)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6.30                  서울특별시감</p>
--	--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평)
신설	학 교	구로구시흥동 218-6 일대	11,139㎡(3,370)
"	"	" 개봉동산 64-17 일대	14,585㎡(4,410)
"	"	" 시흥동 792-15 일대	10,652㎡(3,222)
"	"	" 독산동 143-23 일대	4,990㎡(1,509)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3류	6m	140m	구로구시흥동 212-5	구로구시흥동 214-12	
"	"	2류	8	160	" 개봉동산 64-17	" 개봉동 312-16	
"	"	3류	6	50	" 시흥동 791	" 시흥동 791	
기정	"	"	"	40	" " 792	" " 792	
변경	"	"	"	"	" "	" "	지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3류	4	60	구로구시흥동 792-10	구로구시흥동 792-13	
변경	'	'	'	'	'	'	폐지

다.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41 호

재개발사업환지확정처분일부정정

1. 서고시제 342 호 (81.9.23) 로 환지 확정처분된 재개발사업지구인 전농 1 지구내일부토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 확

정 정정 고시한다.

2. 확정정정내용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하며 송달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본고시문으로 같음하고 변경처리된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및 관할구청시만봉사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다 음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전농 1 지구	동대문구전농동 677-1 일대	7,514.3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24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강동구길동산 62 번지의 7 필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아파트및부대시설)하고 동법 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6.30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3		6	124	길동 316-1	길동 294-2	
폐지	'	3		6	124	'	'	
산설	'	3		6	115	' 316-16	길동산 60-1	

◎서울특별시고시제 243 호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한일은행분구) 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405 호 (78.8.10) 로 실시계획인가된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한일은행분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1.10)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7. 1.

서울특별시

가. 사업기간

당초 : 1978. 7 - 1982. 6.30

변경 : 1978. 7 - 1982.12.31

(6개월 연장)

◎서울특별시고시제 244 호

육류연동가격고시

육류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부 훈령 제 490 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7. 2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㉑

1. 육류연동가격

돼지고기 (정육 600 그램당)

2,300 원

2. 시행일

1982. 7. 5 부터

◎서울특별시고시제 24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69 호 (73.4.30)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점진 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방문동 150-1 번지 일대 정의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82. 7. 2.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방문동 150-1 산 83-13 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교사증축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배치면적 : 21,628 ㎡

2) 건물면적 : 기존 2912.5 ㎡

(연면적 12,145.6 ㎡)

증축 647.3 ㎡ (연면적 4713.7 ㎡)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50-1

학교법인 삼산학원

이사장 윤 기 안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1) 착공일 : 사업시행 허가후 7  
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  
년 이내

바.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24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3 호 ( 80.1.25 ) 로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되고 서고 29 호 ( 81.2.9 ) 및 서고 58 호 ( 82.2.6 ) 로 사업시행변경허가 ( 준공기한연기 ) 된 관내 하계동산 16-38 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 81.12.31 )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 학교 ) 변경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82. 7. 2.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하계동산  
16-38 외 5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변경시행 ( 교사신축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대지면적 : 9554 ㎡

2) 건물면적 : 건축면적 1,148 ㎡  
연면적 4,669 ㎡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계동 산  
16-38

세광산업전수학교장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83 호

K·S 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K·S ( 한국공업규격 ) 표시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2. 6. 26

서울특별시

허가번호 : 제 604 호  
 허가일자 : 80.1.25  
 제조업체 : 남영전구공업주식회사  
 대표자 : 남 상 준  
 소재지 :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13-214  
 규격번호 : KSC 7501  
 품 명 : 배열전구 (일반조명용)  
 종류등급 : L 110V, 60W  
 처분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처분사유 : K·S 규격미달

◎ 서울특별시 공고제 284 호

신봉중고교진입로개설공사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상고시제 428 호 ( 78.8.25 ) 로 시설결정되고 통제 287 호 ( 79.6.29 ) 로 지적고시된 신봉중고교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아래 관계인에게는 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

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6. 25.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1 동 670-87-682- 1 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신봉중고교진입로개설) 실시계획

다) 사업의 규모 : B = 6-8M  
 L = 320M

라)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82. 7.20 - 9.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 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해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첨 부 : 토지 및 건물조서 1부 권.  
 (도면생략)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실적이 용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기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판	제인주소성명	
1	봉천 675-29	대	8	8		손 근 섭	봉천동 675-17	근저당
2	674-32	대	12	12		장 옥 수	구로구독산동 278-202	
3	738-103	천	393	893		서 정 열	봉천동 674-19	
4	688-3	도	30	30		국	건 설 부	
5	674-32	대	32	32		박 병 호	신림동 24-24	
6	689-18	대	8	8		이 봉 원	봉천동 674-6	
						이 봉 균	봉천동 689-5	
						농업협동조	중구충정로 2가 75	근저당
7	689-19	대	19	19		합중양회	번지 (송림동지소)	
						고 정 섭	성북구동선동 4가 225	
8	689-20	대	10	10		한 명 수	봉천동 689-12	
						제일은행	중구충무로 1가 53-1 (영등포지점)	근저당
9	674-21	대	3	3		박 난 의	봉천동 689-8	
10	637-28	대	31	31		신 종 섭	봉천동 637-7	
11	674-18	대	21	21		이 원 휘	동작구상도동산 2	
12	671-14	대	3	3		임 순 애	봉천동 671-5	
13	839-7	도	119	119		국		
14	670-85	전	30	30		이 정 택	봉천동 712	
15	산126-17	임	2	2		신 경 용	중구동자동 21-10	
16	673-213	대	7	7		황 순 오	봉천동 673-2	
17	673-214	대	1	1		오 영 근	마포구공덕동 20-29	
						오 영 훈	동작구상도동 337-7	가등기
18	673-215	대	2	2		김 형 식	봉천동 673-155	
19	738-104	천	1,678	1,678		국	건 설 부	
20	674-34	대	1	1		유 순 회	봉천동 674-21	
						국민은행	중구남대문로 2가 9-1 (영업부지점)	근저당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내용
						관계	주소성명	
21	637-30	도	3	3	원윤철	관	봉천동 637-4	근저당
22	689-16	도	3	3	원성구	관	동대문구상봉동303-30	
23	637-29	대	18	18	조선규	관	봉천동 689-9	
					이순우	관	• 637-6	
					한주택	관	중구태평로1가61-1	
24	689-17	도	17	17	최호영	관	성동구상왕십리동798-16	
25	673-212	대	16	16	박공권	관	봉천동 673-153	
26	690-10	대	10	10	강옥희	관	• 590-2	
27	671-15	대	58	58	승상남	관	• 671-3	
28	671-16	대	30	30	박순용	관	신림동 1541-49	
29	671-17	대	26	26	이만교	관	• 671-2	
30	671-19	대	2	2	최진원	관	• 671-13	

물 건 조 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내용
						관계	주소성명	
	봉천동 671-3	주택	연와조 세멘와조 평옥개 평가집	23평 3홉 9작		관	승상남 봉천동 671-3	

○서울특별시공고제 286 호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132호(76.6.17)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및 지적고시된 구기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구기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

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982. 6.30

서울특별시

공 랑 개 요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구기  
동 151번지의 3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  
(주)미도파 체육관 시설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대지 : 7,359㎡  
(기타별첨)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 2가 123번지  
(주)미도파 백화점 대표 유명집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허가일로부터 15일내  
준공일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및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공람일시 및 장소  
1) 일시 : 공고일부터 14일간  
2) 장소 :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 서울특별시공고제 288 호

금문도특정가구정비사업 (관  
람공사분구) 완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330호 (80.9.24)

로 사업시행허가된 금문도특정가구정  
비사업 (관람공사분구)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제 3 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2. 7. 1.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소공동  
87-10, 87-14, 87-12  
87-1, 87-11 (5필지)

2. 사업명칭 : 금문도특정가구 정비지구  
(관람공사분구) 정비사업

3. 사업시행허가년월일 및 번호 :  
1980.9.24 (서울특별시고시제 330호)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 중구올지로 1가 192-11  
성명 : (주)반도조선아케이트  
(대표 강근호)

5. 완료사항  
대지면적 : 5,371.7㎡  
건축면적 : 3,268㎡  
연면적 : 17,738.5㎡  
층 수 : 지상 1층, 지하 4층  
용 도 : 점포, 주차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89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시행계획정정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53호 (80.2.22),

동고시 제 203 호 ( 81.6.12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7 호 ( 81.7.30 ), 동고시 제 46 호 ( 82.2.3 ) 로 시설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78 호 ( 81.3.23 ), 동고시 제 299 호 ( 81.8.12 ), 동고시 제 35 호 ( 82.1.28 ), 동고시 제 76 호 ( 82.2.18 ) 로 지적고시된 지하철 3, 4 호선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 고속철도 ) 시행허가코저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0 호 ( 82.4.29 ) 로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 하였으나 지적오차가 발견되어 서울시 고시 제 213 호 ( 82.6.4 ) 에 의거 정정 지적승인사항이 있어 정정내용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지하철도과 및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계획공정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 1982.11. 2.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1. 사업위치

가. 본 선

3 호선 : 진관내동

무악동 - 영춘동 - 사직동  
중앙청 - 안국동 - 와우동 -  
종로 3 가 - 필동 2 가 - 장  
충동 2 가 - 금호대교

4 호선 : 동대문 - 서울운동장 - 광  
희동 - 퇴계로 5 가 - 흥무  
로 4 가 - 퇴계로 2 가 - 회  
현동 1 가 - 서울역 - 능가  
대교

나. 정차장

3 호선 : 흥무로 4 가 정차장 ( 중구  
필동 2 가 )

4 호선 : 길음정차장 ( 성북구 길음동 )  
종로 6 가 정차장 ( 종로구  
종로 6 가 ), 서울운동장  
정차장 ( 중구 을지로 7 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울특별시 지하철 3, 4 호선 건설공사

3. 사업시행규모

가. 시행 | : 162,690 ㎡

나. 시행규모 : 폭 10 - 24

연장 12,400

정차장 4 개소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04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 계 명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가. 사업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1 개월 이내

나. 준공 예정년월일 : '84.12.31  
 6.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적, 소유권 권리명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1 호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항 (생략)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성명	소유권 이의권리
			당초	변경			
울지로 7가 119	대지	92.6	84	81.8	울지로 7가 119	이훈희	
120	"	72.7	48	39.3	"	"	
122의 1	"	132.2	80	69.7	광희동 1가 138-1	김재금	
124	"	115.7	113	99	울지로 7가 124	김기수	
123	"	89.3	10	3.5	울지로 7가 125	김진수	
125	"	112.4	25	8.3	"	"	
127의 3	"	19.8	7	0	"	"	
127의 4	"	122.3	8	0	울지로 7가 127	이희준	
129	"	79.3	2	0	울지로 7가 129	홍복점	
130	"	56.2	45	17.7	울지로 7가 131의 2	함정순	
131의 2	"	62.8	62.8	61.4	울지로 7가 131의 2	"	
132의 1	"	89.3	89.3	65.7	광희동 2가 73	조문박	
광희 2가 33의 5	"	66.4	45	33.2	장충동 2가 141의 4	장무세	

건 물 조 서

소재지 지번	구 조	수용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성명	소유권이 이의권리
		당초	변경			
울지로 7가 127의 3	새벽, 벽돌 영업	10 평	0	울지로 7가 125	김진수	
127의 4	목조와즙	20 평	0	울지로 7가 127의 4	백규석	
129	철근, 콘크리트 평육, 점포, 주택	41 평	0	울지로 7가 129	홍복점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도형	지방공무원법 제 6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퇴직	마포구 세무 1과	지방행정주사
소용근	.	은평구 총무과	.
간상록	.	영등포구 주택과	.
이돈영	.	강서구수도관리과	.
유수만	.	마포구	.
김봉수	.	서대문구 총무과	.
이봉표	.	마포구 세무 2과	.
정면리	.	서대문구 총무과	.
강일식	.	영등포구	.
		건설관리과	.
이종근	.	도봉구 월계동	.
박현규	.	북부위생처리장	.
김두경	.	시립운동장	.
이재울	.	시립서대문병원	.
민병휘	.	성북구	.
		수도관리과	.
이국학	.	도봉구	지방행정주사보
		수도관리과	.
조용삼	.	장묘사업소	.
김육봉	.	강동구	지방간호기사
		보건소	.
이명숙	.	동대문구보건소	지방간호기원

◎ 1982년 7월 1일자

명제 32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주성	영동포구	농축과	지방농림기사
정영준	성동구	양정과	.
윤환운	녹지사업소	공원녹지과	농림기사
이규영	.	.	지방농림기사
류성영	.	.	.
홍종덕	용산구	.	.
이희성	남산공원 관리사무소	.	.
권항석	공원녹지과 농림기사	용산구	.
윤종덕	녹지사업소	성동구	.
최신수	서대문구	도봉구	.
류원상	강서구	서대문구	.
도지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강서구	.
김규배	공원녹지과	.	.
성현영	강남구	강동구	.
김계기	농축과	.	.
유용학	강동구	녹지사업소	.
윤영수	도봉구	.	.
장기호	관악구	.	.
장태진	농축과	.	.

성명	발령사항	번부서	직급
유운암	양정파 농림기사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지방농림기사
신동경	공원녹지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육형길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	농속과	지방농림기사보
	지방농림기사		
이종수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양정파	농림기사보
	지방농림기사보		
장수용	녹지사업소	양정파	지방농림기사보
김종욱	"	공원녹지과	"
유원준	"	"	"
이사원	공원녹지과	종로구	"
구종서	서대문구	"	"
박문수	영등포구	종로구	"
	농림기사보		
현인석	도봉구	용산구	"
김용문	강서구	동대문구	"
이우일	용산구	"	"
채외관	양정파	도봉구	"
	농림기사보		
이세영	동대문구	"	"
민경희	남산공원	"	"
	관리사무소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장창규	섬복구	도봉구	지방농림기사보
임재희	마포구	은평구	•
윤석은	도봉구	•	•
윤상욱	관악구	강서구	•
윤병식	공원녹지과 지방농림기사보	영등포구	농림기사보
이성수	도봉구	동작구	지방농림기사보
안재현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강남구	•
손근도	종로구	•	•
권병규	강남구	강동구	•
김병기	강동구	녹지사업소	•
박인제	중구	•	•
임영택	강서구	•	•
진렬규	강동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김광수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 지방농림지원	농축과	농림지원
이창진	강동구 지방농림지원	중구	지방농림지원
정봉래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지방농림지원	성동구	농림지원

39-32

제 916 호

시

보

1982.6.25

성 명	발 명 사 랑	현 부 서	직 급
김 상 수	강 동 구	성 동 구	지방농림지원
김 덕 영	공무원교육원	동대문구	"
강 동 열	동대문구 농림지원	성 북 구	"
김 현 팔	녹지사업소	도 봉 구	"
최 진 규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지방농림지원	은 명 구	농 립 기 원
유 중 현	영등포구 농림지원	강 서 구	지방농림지원
김 태 호	용 산 구	"	"
이 덕 재	동 작 구	영 등 포 구	"
우 복 명	서대문구	동 작 구	"
김 재 두	강 서 구	관 악 구	"
윤 효 근	동 작 구	"	"
권 혁 길	녹지사업소	강 남 구	"
김 용 운	강 남 구	강 동 구	"
김 동 주	동대문구	"	"
유 덕 수	녹지사업소	"	"
권 신 태	강 남 구	"	"
우 병 민	"	녹지사업소	"
김 덕 현	강 동 구	"	"

성 명	발 립 사 항	현 부 서	직 급
한 정 피	성동구 농림기원	녹지사업소	지방농림기원
신 경 순	농축과 농림기원	.	.
김 제 만	공원녹지과 농림기원	.	.
강 동 현	강동구 지방농림기원	.	.
이 윤 근	은평구 농림기원	.	.
박 남 수	양정과 농림기원	남산공원관리사무소	.
김 동 욱	도봉구 지방농림기원	.	.
심 문 섭	공원녹지과 농림기원	.	.
장 상 철	동대문구	.	.
유 락 준	성동구 농림기원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	.
장 우 섭	중 구	.	.
이 창 재	녹지사업소 농림기원보	공원녹지과	지방농림기원보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박 찬 욱	동대문구	용 산 구	지방농림지원보
이 범 성	강동구 농림지원보	성 동 구	농 립 기 원 보
김 진 구	강동구	동대문구	지방농림지원보
송 울 근	구로구 지방농림지원보	·	농 립 기 원 보
허 권 봉	강동구	·	지방농림지원보
김 진 열	동대문구	도 봉 구	농 립 기 원 보
김 기 진	강서구 지방농림지원보	은 평 구	·
오 대 근	녹지사업소 지방농림지원보	서대문구	·
배 춘 식	강서구 지방농림지원보	·	·
강 성 락	동작구	강 서 구	지방농림지원보
김 유 봉	구로구	·	·
김 용 문	도봉구 농림지원보	구 로 구	·
박 민 영	강동구	강 남 구	농 립 기 원 보
주 철 식	녹지사업소	·	지방농림지원보

성 명	발령사할	면부서	직급
김재봉	녹지사업소	강남구	지방농림지원보
윤석암	강동구	강남구	지방농림지원보
심규환	강남구 농림지원보	강동구	지방농림지원보
원대식	녹지사업소 지방농림지원보	강동구	농림지원보
남상수	녹지사업소 지방농림지원보	강동구	지방농림지원보
박제환	녹지사업소 지방농림지원보	강동구	지방농림지원보
최학렬	녹지사업소 지방농림지원보	강동구	지방농림지원보
이병래	녹지사업소 지방농림지원보	강동구	지방농림지원보
박귀원	녹지사업소 지방농림지원보	강동구	지방농림지원보
김한수	강남구	농무신교육원	지방농림지원보
이쌍룡	강남구	녹지사업소	지방농림지원보
김량수	강동구	녹지사업소	지방농림지원보
이동배	강동구	녹지사업소	지방농림지원보
황경상	도봉구 농림지원보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	지방농림지원보



◎ 1982년 7월 5일자      령제 333 호  마포구상암동      김 정 자 지능행정서기보시보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명함.  ( 1982. 7. 5 - 1982. 12. 30 )			
◎ 1982년 7월 2일자      령제 334 호		성 명	발령 사항	원 부 서	직 급
박 상 원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 규정에 의하여 전책에 처함.	자동차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	사무관
황 병 철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1 월액 처함.	등록과장	동로구수도관리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 1982년 7월 3일자      령제 335 호		성 명	발령 사항	원 부 서	직 급
박 승 흥	시장개발담당관 조직관리계장	시장개발담당관	시장개발담당관	지방행정	사무관
서 재 수	시장개발담당관 시장연구계장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사무관
이 종 상	새마을지도과 새마을계획계장직대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지방사무관	사무관
박 종 청	회계과관리계장직대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지방사무관	사무관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광수	관악구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무관
이종우	성북구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무관
경환석	공무원교육원	새마을지도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종인	공무원교육원	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이서용	공무원교육원	외계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점찬	공무원교육원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김병준	공무원교육원	강남병원	지방행정사무관
문준호	공무원교육원	관악구기획감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p>◎ 1982년 7월 2일자      령제 336 호</p> <p>보광동수원지사사무소장 지방공업기정      김수은</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 1982년 7월 3일자      령제 337 호</p> <p>강남병원      박정애 지방간호기사보</p> <p>서대문병원파견 (82.7.1-82.12.31)</p>	<p>서대문병원      이재선 지방간호기사보</p> <p>강남병원 파견 (82.7.1-82.12.31)</p> <p>강남병원      김진희 지방간호기원보</p> <p>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파견 ( 1982. 7. 3 - 1982. 8. 31 )</p> <p>지하철운영사업소      정관교 지방토목기사보</p>
--	--

제 916 호 시

보 1982. 6. 25. 39-39

관악구 파전근부

( 82. 7. 3. - 82. 9. 30 )

서울특별시장